



산학협력협약서

ONE4U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과 (주)원포유(이하 양 기관이라 칭함)간의 산학협력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과 학술정보, 산업정보 및 기술의 개발·공유를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진사업) 양 기관의 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1. 산학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취업,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, 취업예정자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에 관한 사항
2. 공동관심사에 대한 연구 및 사업 추진 활동
3. 학술정보의 교류 등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
제3조(기본운영원칙) 양 기관의 원활한 상호협력 교류를 위해 필요한 특정 규정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제정하고, 기타 사항은 해당기관의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.

제4조(협동연구수행) 본 협약에 의한 연구는 양 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, 재학생, 기타 관련 임·직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과제의 발굴 및 수행과 기술자문 등의 협동연구를 활성화하여 산업화 과제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한다. 수행 인원 및 수행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제5조(인적자원교류) 양 기관의 연구원 및 임직원과 교수·연구원, 재학생을 협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시 양 기관에 파견, 기술 및 학술자문, 교육, 연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6조(시설장비활용 및 활동지원) 본 협약을 위해 설치될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는 상명대에서 진행하며, 양 기관은 연구 활동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, 장비를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제7조(학술정보교류) 양 기관은 협동연구 수행 시 필요한 학술 및 기술정보와 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상호 교류한다.

제8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동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상호 간 비밀사항을 제3자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.

제9조(비용부담)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연구과제별 사안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본 협약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명으로 그 의사를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권리, 의무의 승계) 본 협약 당사자의 명칭, 대표자 등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 시에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포괄 승계 된다.

제12조(기타) ①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,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며 상기 협약내용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.

2021년 9월 3일

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

312-82-10241

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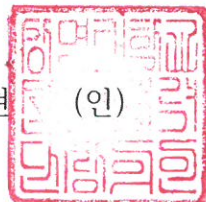
상명대학교 내

(주)원포유

120-81-79417

서울 강남구 도곡로222, 5층

단 장 오 준 현 (인)



대 표 전 동 호 (인)

